

인터파크통영씨어터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아트홀 통' 대관규정

제정 2019. 10.

개정 2020. 03.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인터파크통영씨어터'(이하 '운영사')가 운영하는 통영리스타트플랫폼(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195) 내 아트홀 통(이하 '공연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 관리와 대관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행사', '연습', '녹음', '녹화' 등 행사를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운영사'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③ '극장 유보석'이라 함은 해당 공연의 홍보를 위해 '대관자'가 '운영사'에 제공하는 공연에 대한 비매 티켓을 말한다.
- ④ '운영사'는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 ⑤ 대관의 범위는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제 3 조 대관의 기본사항

- ① 대관은 기본대관과 기타시설을 포함한 대관으로 구분한다.
- ②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정한다.
- ③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및 공휴일은 휴관일로 정한다.
- ④ 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기타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휴무 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대관신청

- ①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시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②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플랫폼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3.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변경을 2 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4.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5.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6. 상품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7.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 5 조 대관승인

- ① 운영사는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대관승인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② 운영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운영사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④ 대관자는 운영사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운영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운영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대관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운영사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5.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공연대관 취소의 경우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제4조에 의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대관료

무료대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대관료는 다음과 같으며 기본대관과 조명·음향설비 사용에 따른 대관으로 구분한다.

(VAT 포함, 원)

구분	평일 주말 동일	비고
A. 기본대관(10 시~22 시)	55,000	
B. 음향시설 포함	77,000	음향시설 (음향감독 or 오퍼레이터 별도 섭외)
C. 조명시설 포함	99,000	음향+조명시설 (음향·조명감독 or 오퍼레이터 별도 섭외)

※ 기업체, 방송(촬영) 대관료는 별도 협의

<기본대관료 포함사항>

- 기본무대, 하우스 조명(시스템 사용 X) 및 기타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 부대시설, 냉난방
- 출연자 분장실, 공동시설 및 공간

<기타사항>

- 시설사용 가능시간 전·후의 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대관료의 200%를 적용함
-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행사의 경우 우선대관 및 무료대관을 진행할 수 있음
- 플랫폼 입주단체(창업랩, 지역창업커뮤니티센터, 창업카페) 주관 행사의 경우 내부검토 후 우선대관 및 무료대관을 진행할 수 있음

제 8 조 대관료 납부

- ①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7일 이내에 대관료의 50%, 대관일 기준, 3일 이내에 잔금

50%를 '운영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② 대관예정일 30일 이내 대관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대관계약 체결 시 대관료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
- ③ 사전협의 없이 사용중 추가로 발생한 대관료에 대해서는 사용 종료 후 3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 ④ 대관료는 계좌 입금만 가능하다.
- ⑤ 대관자가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은 운영사의 소유가 되며 사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9 조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사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 내에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②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해 대관일로부터 60일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운영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반환)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제 11 조 대관내용 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 ① 대관자는 대관신청시 명시한 내용(공연명, 공연일정, 출연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에 따라 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연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대관기간 중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공연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③ 운영사는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료를 부과한다.
- ④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9조에 의해 처리된다.
- ⑤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변경요청일이 대관 가능할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정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연취소 및 중지

-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운영사는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제 13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통영리스타트플랫폼의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운영사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운영사가 철거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운영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② 대관자는 운영사의 시설물 철거요청에 즉시 응해야 한다.
- ③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운영사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되, 특히 무대장치나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운영사의 요청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운영사에 제출해야 무대장치나 장치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운영사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③ 대관자는 운영사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⑤ 대관자는 공연장 시설 파손시 운영사에서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⑥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 공연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⑦ 운영사는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할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⑧ 대관자는 운영사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사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⑨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운영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 ⑩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5 조 무대 안전교육 의무

- ① 「공연법」 제11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9조의4 에 의해 공연에 참여하는 스태프 및 출연자 등의 모든 공연자는 플랫폼이 정한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플랫폼이 정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교육: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과정(55 분)’ 이수 후 대관시작일 1 일 전까지 플랫폼에 수료증 제출
 2. 현장교육: 대관 기간 중 플랫폼에서 10 분 내외의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시 행동요령 등 안내
- ②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플랫폼은 대관자의 공연 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6 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 ① 대관사용자가 공연,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운영사(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운영사는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대관사용자가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운영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7 조 입장권 발권

- ① 대관자는 입장권 발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운영사와 협의해야 하며, 운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운영사는 공연장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부 좌석을 유보석으로 사용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구분	좌석타입	스탠딩타입
수량	총 4 매 이내	총 10 매 이내

- ③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행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운영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사는 공연장 입장을 제한, 거부할 수 있다.

제 18 조 광고 홍보물 협의

- ①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사의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 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재한다.
- ③ 운영사는 대관자의 공연 홍보를 위하여 운영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목적으로 전자파일 형태의 홍보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운영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제 19 조 방송중계, 촬영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운영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는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제 20 조 공연진행협조

- ① 스태프회의

1.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7일 전까지 운영사의 주관하에 스텝회의를 해야 한다. 스텝회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준비대관시작 2일전까지 운영사와 사전 협의 해야 한다.
2. 대관자는 스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 운영사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출입관리

1.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장치 및 장비설치는 기술 검토 후 운영사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2.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운영사가 진다.
3. 백스테이지 출입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이를 위하여 운영사에서는 대관자에게 백스테이지 출입을 위한 보안키를 대여하고, 행사 종료 즉시 대관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연진행

1.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3시간 전 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2. 대관자는 운영사의 기술스텝과 운영담당자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 중 문제발생시 운영사의 기술스텝 또는 운영담당자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3. 대관자는 공연개시일 전까지 운영사가 요구하는 수량의 프로그램 3부와 공연 포스터 및 상세페이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공연진행과 관련한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은 대관자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 21 조 규정의 효력 및 적용시기

본 규정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2 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운영사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② 대관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사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사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 23 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관할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은 운영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